

2015년 제5차 정책포럼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개선을 위한 과제

주관: (사)시민 정책위원회

주최: 서울시NPO지원센터

수록 목차

사 회 :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발표1 : 김성진 (사)선 상임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을 위한 법제 과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3
발표2 : 좌세준 법무법인한맥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새로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의 제안과 그 내용〉	15
토 론 : 송재봉 충북NGO센터 센터장,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34
임현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전제(前提)〉	39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시혜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41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대표 〈‘시민사회’ 사회적 인지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43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46

<발제문 1>

시민단체지원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개정 사항 검토

김성진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

□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개정 필요 사항 별 검토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요건 완화

- 기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 필요
- 비영리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 개정안 제2조 4호로 반영

2. 개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의 폐지 내지 해당 보조금 관련 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부칙으로 폐지함을 규정
- 이른바 빅3에 대한 보조금 결정을 통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이를 위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지원법 개정안 제6조 제1항)

3.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의 설치

- 지원법 개정안 제11조의5로 반영

4.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비 포함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지원법 개정안

제 6조 제2항)

-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의 근거 없는 운영비 교부를 금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둘 경우 운영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개정)

5. 발전기금 조성

- 지원법 개정안 제11조의6으로 반영

6. 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독립기구

- 기본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비영리민간단체활성화위원회를 둠(지원법 개정안 제3조의4)

7. 간접지원 제도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지원법 개정안 제10조)
- 통신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지원법 개정안 제11조)
- 경영지원 및 그 위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지원법 개정안 제11조의2)
-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지원법 개정안 제11조의3)
- 임대료 지원 및 국공유 시설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지원법 개정안 제11조의4)
- 공익공공채널을 통한 홍보 및 방영권 지원은 '홍보비'지원 정도로 근거 규정 마련(지원법 개정안 제11조의4)

□ 미반영 사항

1. 법인격 취득에 관한 규정

- 민법 개정안에 따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될 경우, 법인격취득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도로 법 개정 필요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음

2. 보조금의 집행, 정산 평가 절차에 대한 기준과 제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분적으로 규율

□ 개정 법률 안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별첨 1)
2. 지방재정법 개정안(별첨 2)

<별첨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영리민간단체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비영리민간단체위원회)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비영리민간단체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민간단체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및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예산 등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영리민간단체 발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심의·조정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발전정책을 추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3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항삭제)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회의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 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제목개정 2015.5.18.][시행일 : 2015.8.19.] 제9조

제10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 및 통신비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경영지원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3(교육훈련 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4(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시설비, 홍보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5조(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인 등의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센터의 신청·지정·취소의 절차, 수행사업의 범위, 평가의 방법,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조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금융기반 조성과 비영리민간단체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의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비영리민간단체의 금융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8(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9(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 2015.8.19.] 제12조의2

제13조(별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발제문 2>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과 검토

좌세준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 제안의 취지

시행된 지 15년을 맞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4. 13. 시행, 약칭 : 비영리단체법)은 그 규율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시민사회 활성화와 포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 일반적임.

현행 비영리단체법의 단순한 ‘개정’을 넘어서는 기본법 형식의 포괄적인 비영리단체 지원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전제할 때, 기본법의 구체적인 법률 명칭은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또는 ‘민간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법’ 등 다양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규정에 대한 제안과 검토 의견

이하에 제시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규정들은 아직 ‘시안(試案)’ 정도의 법안이며, 규정 체계와 구체적인 조항의 문언, 용어의 일관성 등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임.

기본법이 담아야 할 내용 또한, 예컨대 “시민교육 등을 별개의 장으로 규정할 것인가?”, 민간 공익활동 지원 부처와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컨대, 위원회, 기금, 재단 등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임.

□ 발표 방법과 토론

<별첨> 법안 각 조항에 대한 간략할 설명 방법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
과 의견 수렴의 방법.

<별첨>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시민)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한 기본원칙,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시민) 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민간(시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나.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라. 상시 구성원수가 30인 이상일 것
 - 마. 최근 1년 이상 민간(시민)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사람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시민)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으며,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② 민간(시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시민) 공익활동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고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은 민간(시민) 공익활동의 다양성 및 자발성,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은 민간(시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과 절차,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등을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

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간영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규정 취지】 (제1조~제5조)

1. 기본법 총칙 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법목적, 기본원칙**을 규정함.
2. **‘비영리단체의 자율성’** 규정 :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본질적 내용은 ‘결사 내부조직, 구성원 결정, 의사결정기구, 업무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기본법의 기본이념, 기본원칙으로 선언되어야 함.
3. **보편적 지원, 평등의 원칙**
 - ①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의 원칙(제11조 제1항)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원칙으로 기본법에 선언되어야 함.
 - ②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모든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4. **실효적 지원의 원칙** : 민간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원 대상이

되는 공익활동, 시민들의 수요,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과 제도개선에 집중되어야 함.

5.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분배, 민간영역과의 협력체계**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절차와 사후평가를 위한 독립적 기구의 설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배 원칙이 근거가 되는 원칙 규정 포함.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법이 제정되는 경우 이른바 3대 특별법(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BIG3 단체에 대한 특혜성 운영비 지원 등은 위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의 원칙’,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시한) 등을 두는 방법으로 기본법에 의한 ‘보편적 지원’ 체계로 흡수(3대 특별법의 폐지 또는 특혜성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형태의 법 개정)하여야 할 것임.

제2장 시민사회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시민사회 성장 및 발전 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시민사회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방법
3.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수단
4. 시민(민간) 공익활동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책과 수단
5.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강화 방

안

6.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집적과 공유에 관한 사항
 7.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활동가,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복지제도 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10.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1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시민사회 성장 및 발전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역 중심의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발전 추진 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시·도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④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사회발전위원회)¹⁾ ① 시민사회의 성장·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비전 수립
 2.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형태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대신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시민사회발전재단’ 형태의 독립재단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설립절차, 이사회, 정관, 재원 등)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위원회와 재단 형태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기능의 차이점,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함.

4.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추진계획의 이행 점검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의 성장·발전과 관련한 의제 확산과 이를 위한 민관정협력체계 구축 및 정부 부처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6. 정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시민사회 성장·발전 정책 촉진과 조정사항
7. 시민사회의 성장·발전과 관련된 예산 등의 확대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의 성장·발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과 관련제도 정비사항
10. 제6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사회의 성장·발전과 관련하여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2.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3.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활동가,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복지제도 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15. 시민사회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전문가 위원을 합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제2호의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한다.

1. 정부위원 : 행정자치부 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 시민(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전문가위원 :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으로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민간위원과 전문가위원 중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상근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거나 관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지역 내의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성장·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하도록 한다.

④ 그 외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협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계획, 지역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원 사업 등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추진계획, 지역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와 통합, 예산의 분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취지】 (제9조~제13조)

- 통상의 기본법이 규정하는 체계에 따라, 민간공익활동 지원(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함.
- 비영리단체 지원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의 설치는 다양한 형태(위원회, 독립재단)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²⁾ 현행 비영리단체법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영리단체의 생명은 ‘자발적인 활동의 보장’(제1조)과 ‘비영리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 존중’(제3조), ‘자율성 보장’(제5조 제1항)이므로 이와 같은 원칙이 준수될

2) 1997. 10. 22.에 발의되었던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기문 의원 외 68인 발의)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운동지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두고, 이와 별도로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갖는 담당기구(재단 등)의 설치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제3장 시민사회발전기금

제14조(시민사회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의 성장·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시민) 공익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 전입금
5.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별도의 지역 시민사회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민간(시민)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운영, 수행 사업에 대한 지원
2. 민간(시민)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가, 활동가의 양성, 역량강

화 사업

3.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
4.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지식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사업
5.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운영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시·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위원회와 시도위원회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도 위원회에 시·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시·도 기금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1항 내지 5항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 취지】 (제14조~제17조)

-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중앙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비영리단체의 자율성 침해 등의 근본적 한계가 있는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 등을 제외한 통상적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별도의 기금(가칭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발전기금 또한 기금관리주체가 주무부서(예 :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있을 수 있으나, 기금의 성격상 정부 출연금,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의 출연금,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기타 재산 등 다양한 출연방법에 의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비영리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에 비해 상대적인 독립성, 자율성, 탄력 있는 재정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시민사회발전기금은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생적인 시민단체 인큐베이팅, 정책개발 능력 향상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보조금 지급의 편파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시민사회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 기존 기금의 운영체계와 부합하는지 등도 입법기술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제4장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18조(법인격 취득 등의 특례) ① 민간(시민)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한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3장(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취지】

-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의 조직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보다 용이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인 설립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완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법인 설립인가주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득을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데는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9조(재정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사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나 비용(이하 '보조금 등'이라고 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우편요금, 통신비 등의 지원) ①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민간(시민)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민간(시민) 공익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취지】

- 현행 우편요금 감경제도가 실효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신료 감면제도를 기본법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제22조(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모금 및 홍보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시민)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민간(시민) 공익활동 수행과 관련한 모금 및 사업, 단체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법 제70조 제3항, 제8항에 따라 운용되는 공공채널, 공익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이 규정하는 홍보활동의 지원의 요건과 내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취지】

- 공공·공익채널(지역방송 채널 등 포함)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자신의 조직 및 활동 등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후원자 모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공익채널을 통한 비영리단체 홍보 및 방영권 지원의 근거규정을 기본법이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비영리단체 종합 포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규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제2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무상사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민간(시민)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규정취지】

- 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무상 또는 소정의 사용료로 비영리단체의 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제24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시민) 공익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장·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대국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규정취지】

- 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제도(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 복지제도에 대한 지원 규정, 공제조합, 상조규정 등)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제26조(민간공익활동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민간(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및 민관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시민) 공익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규정취지】

- 현재 다양한 형태(민간경상보조, 조례, 위탁사업 등)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NPO센터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내 NPO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7조(민간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민간(시민) 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

영역의 참여와 민간 자원과의 연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 및 평가

제28조(운영의 공개)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내역과 사업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단체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처리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및 비용 지원과 관련한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 구성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과 평가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평가방법과 감독 수단을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취지】

- 민간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후감독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감독이나 평가절차가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이나 자발적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후감독이나 평가 자체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중간조직-비영리단체 상호간의 참여형 또는 쌍방향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31조(보조금 등의 환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 등을 지원 신청서 등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시한)

<토론문 1>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

1. 기본방향

○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NGO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공모라는 형식은 취하지만 사업분야를 정부가 지정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사업비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 직접지원으로 인한 NGO자율성 침해, 사전 사후평가의 부실, 간접지원 제도의 제약, 지원분야에 있어 NGO가 실제 필요한 교육 및 업무용 기자제,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제외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민사회 성장과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좌세준 변호사님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법 형식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의 분리와 자율성이 확보된 건강한 시민사회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시민사회 발전과 정부의 관계와 책임문제, 시민사회와 연계된 법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시민사회 자체적인 비전제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 제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2.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관련 의견

법안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부수적인 의견과 궁금한 점을 제시해 보면,

1) 법안의 명칭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이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됨. 지원이란 표현은 시민사회단체를 수동적 수혜자로 인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8조(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④항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⑤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한 필요가 있음.

3) 제10조(위원회 구성 등)에 민간위원: 시민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할 경우 모든 위원이 서울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역의 참여가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참고로 지금까지 구성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에 지역시민사회 출신이 한명도 참여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민간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4) 제14조(시민사회발전기금의 조성) ②항 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들어 있고, 또한 ④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역 시민사회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도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됨. 중앙에 설치되는 시민사회발전기금의 조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제외하고 광역 단위별 기금 설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5) 제17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부하면서 편중지원, 비효율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보조업무를 중앙 및 광역 시도에 설치되는 기금관리 위원회가 통합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6) 제2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무상사용 등)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 속에 각종 회의실, 연수시설 등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문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관료들에 의해 지원회피의 명분이 되므로 그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은(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연수 및 숙박 시설, 행사장 등) 어떠한지 검토가 필요함.

7) 제30조(감독과 평가의 기본원칙)에서 사업추진 실적과 평가를 서면평가에 한정하지 말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선정하는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현장평가 중심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사항 검토관련 의견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요건을 100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다만 기초단위 농촌지역을 고려하면 50명도 많다고 판단됨. 30명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떠한지?

2) 제3조의 3(시도별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시도별 조례에 따라 로 변형하되,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살리는 것으로 수정.

3) 제3조의 5(위원회의 구성 등) ③항 1호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에 '지역 균형을 위한 지역대표성을 고려한다'를 추가

4) 제11조의 4(시설비 등의 지원)에서 ‘국유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활동을 위한 회의, 연수, 행사, 세미나 등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관료들은 구체적인 문구가 없으면 이를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5) 제11조의 5(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에서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관여해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필요하다면 중앙단위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도록 하면 될 것임.

6) 제11조의 6(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 조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제외하고, 광역단위별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광역단위별 기금의 조성에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함.

4. 기타

1)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원확보 방법의 다양성, 조직 및 의제발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안들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역재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나 지역재단의 성장할 수 있는 여건(기부금 모집의 제약,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축소 등) 조성이 필요함.

2) 주민세의 1%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할까요?

일본 이치카와 시 정부는 2005년 4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시민단체를 지정하면 자신이 낸 주민세의 1%를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6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 또한 쉽고 다양하다. 정기적

으로 발행되는 시 홍보 인쇄물에 각 시민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번호를 부여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 번호 3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인쇄물을 시청 세무과나 시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1% 후원이 진행된다. 또한 이치카와 시 불란티어·NPO활동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제껏 세금을 내기만 하고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1%이지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평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 지역주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제도를 ‘1% 지원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헝가리의 1%법(1996년 헝가리에서 납세자가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 할 수 있는 법률. 헝가리에서 탄생한 이 법률은 1998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구)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활동과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시 홍보지와 웹페이지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명회, 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TV,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FM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1%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지역주민들 또한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westwood@makehope.org)

<토론문 2>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전제(前提)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 고려해야 할 문제

- 우리에게 과연 ‘법’과 ‘사실’에 기초해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는 존재하는가?
 - 대한민국을 인정하면서 그 일원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는?
- 본질의 문제: 동질(同質)의 시민사회 대(對) 이질(異質)의 시민사회
 - 공익(公益)인가, 아니면 자기들만의 공익(共益)인가.
- 시민사회,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
 -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정의
 - 자발성(自發性)과 공익성에 관한 문제
 - 정부의 개입에 의한 펀드 모집 또한 세금의 일환

■ 보수진영 내부의 두 시각

-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정부(政府)와 시장(市場) 사이 시민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주류로 부상
 - 좌파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필요 악(惡)

- : 시민사회는 계급투쟁(또는 사회전복)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
- 이러한 관점이 자리 잡게 된 배경
 - : 주요 사회이슈를 통한 자기학습과 확산

○ 긍정적인 시각

- 세계화 및 글로벌 사회,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 증대
- 거버넌스의 중요성 인식
- 동질(同質)을 전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한 견해

○ 두 가지 견해

- ▷ 정부 보조금을 더 줄이고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견해
- ▷ 부분개정을 통해 법안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
 - : 간접지원비,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인건비 등

■ 과제

- 오해와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합리적인 시민사회는 가능한가?
- 안정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문 3>

시혜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혜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 2000년 4월 13일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법명에서부터 ‘지원’이라는 시혜적인 느낌이 든다.
- 제1조(목적)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은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다.

□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민주주의 확대의 원칙과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관련법과 관계 고려)
- 협치를 위해 정부(지방정부)는 정책의 공유 책임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회의를 비롯한 제반 거버넌스의 활동 내용을 공개를 규정해야 한다.

□ 새마을운동조직을 비롯한 3대 관변단체 지원법과의 충돌 문제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 3대 관변단체 지원 특별법을 폐지되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 들어 200곳이 넘는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
-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이 이들 중복 지원하는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관련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며,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역할과 권한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함께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조금 운영과 시민사회발전기금 관련

-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중 10~20% 정도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의 인건비로 책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민사회발전기금?

□ 시민사회 어떻게 자생력 강화할 것인가.

-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저변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전제이다.

<토론문 4>

‘시민사회’ 사회적 인지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대표)

1.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입법, 입법운동의 효과

- 시민단체, 시민단체, NGO, NPO등 시민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칭하는 단어들과 지원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명칭이 다름.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이라는 법안 명칭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지원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함.

2. 국가가 왜 시민사회를 지원해야 하는가?

- 진보, 보수의 갈등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높아짐.
-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이 활성화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이유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 필요.
-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인, 단체들의 자발적 활동들에 대한 꼼꼼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필요성 확보

- 1인, 청년NGO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3. 빅 3단체 지원 법률 폐지

- 찬성이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볼 때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입법 자체에 대한 정치적 논란 발생이 우려 됨.
- 입법 필요성과는 별개로 입법을 위한 과정과 입법운동 주체들의 준비 정도, 정치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내용임.

4. 시민사회발전기금 운영

-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받는 사업보조금의 성격이 분명해야 함. 공익적 목적사업이어야 하고, 절차 과정 평가과정이 투명해야 함.
- 14조 2항 기금의 출연에서 법인이나 단체에는 기업도 포함되는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5. 간접지원 강화 및 다양화 필요(21조 ~ 26조)

- 직접지원 필요하지만, 자율성 침해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홍보채널, 활동가 교육훈련, 공무원, 학교 등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교육 강화가 필요
- 입법을 통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단체들의 인지도 확산을 통해 활동가들의 자존감 향상도 중요.

6. 자료 제출의 범위(29조 2항)

‘29조 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 구성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 현재도 지정기부금단체들은 대부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국세청에 기부금납부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7. ‘시민사회발전기본법’으로 명칭변경

- 입법취지와 목적에 적극 동감함.
- 시민사회영역 종사자들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입법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함.

<토론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오늘 발제문에 관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충분히 사전 검토하지 못했으므로, 이 토론문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 제2차 정책 포럼

- 지난 포럼에서 ‘기본법 형태의 법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편향적 보조금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기구)의 부재’를 언급,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이를 법으로 규율 또는 실질적으로 개입 가능한 영역인지 궁금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 기존 비영리단체법 조항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은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법안을 ‘전면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제11조 5.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위상,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단, 기존 기관에서 ‘센터’의 형태로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지역내 단체 활성화, 자율성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일을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 출신이거나 이를 지향하는 사람이겠지만, 센터의 형식으로 준 공무원 조직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에 대하여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에 말하는 시민은 누구인가? 민간(영역)과 동일한가?
- 대부분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법 대상이 되는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책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 ‘계획 수립의 협조’ 조항이나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방안조차 없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대해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자부에서 조정하거나 이행점검 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 비영리단체 지원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가?

□ 여론 수렴방안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Big3 관변단체의 대대적인 반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구동력 확보

○ 비영리단체지원법 전면개정 VS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제화 -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절실한가?

□ 제개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5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책포럼

시민사회와 서울의 공익이슈를 주제로 2015년 총 7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회차의 포럼 자료집 내려받기와
이후 개최되는 포럼에 대한 안내는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eoulnpocenter.kr

■ 문의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정책팀

이재환 팀장 070-7727-7648 y2kljh@seoulnpocenter.kr